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46

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 송옥주・이수진・박 정

윤준병 • 전종덕 • 한정애

김남희 · 임미애 · 김태년
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 량이 적정 수준인 80~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.

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·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 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3 신설).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의 무상·할인 제공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·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를 입은 자
- 4. 학교·군부대·교도소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·단체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관·단체
-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·요건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 선 설> 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의 무상・할인 제공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・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.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
위계층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피해를 입은 자 4. 학교・군부대・교도소 등 공 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・단체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관・단체

요건 및 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